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제공 의무 부여 등〉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96, 2202697, 2202699, 2202700, 220270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II. 검토의견	6
1.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제공 노력 의무 부여	6
2. 위탁 의료시설 지역별 기준 설정	11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8. 9.
- 3) 회부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8. 9.
- 3) 회부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8. 9.
- 3) 회부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2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8. 9.
- 3) 회부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3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4. 8. 9.
- 3) 회부일 : 2024.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50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제51조제2항).

II. 검토의견

1.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제공 노력 의무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¹⁾은 국가유공자 등²⁾에 대한 의료지원 이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제공 노력 의무를 함께 부여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료지원) <u>국가</u> 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u>한다</u> .	제41조(의료지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 ----- ----- ----- <u>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료지원) ① <u>국가</u> 는 독립	제17조(의료지원) ① <u>국가와 지방</u>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2)」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하 같음)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u>한다</u>. ② (생 략) ③ (생 략) ④ ~ ⑧ (생 략)	<u>자치단체</u>----- ----- -----<u>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정 부 안
제32조(의료지원) <u>국가</u> 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u>실시한다</u> .	제32조(의료지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 ----- ----- ----- <u>실시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료지원) <u>국가</u> 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u>한다</u> .	제33조(의료지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 ----- ----- ----- <u>하</u> <u>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u>

	<u>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0조(의료지원) <u>국가</u> 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u>한다</u> .	제50조(의료지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 ----- ----- ----- <u>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각 개정안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6개 보훈병원³⁾과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전체 보훈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⁵⁾ 1순위는 일반 병·의원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서비스

3) 중앙,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보훈병원

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근거한 조사로 3년마다 실시되며, 2024년에는 10,0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5)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p.212.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일반병원 60.6%, 보훈병원(20.4%), 보훈병원(14.8%), 국공립병원(4.2%)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⁶⁾

□ 특히,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개 지역과 이를 제외한 지역 간에는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먼 지역으로 원정 진료까지 다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균등한 의료지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목표 과제로서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지원의 수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어 ‘균등’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적인 규정으로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6) 일반 병원 이용자의 62.3%는 일반병원 이용이 편리한 교통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7) 서울신문, “보훈병원 없어 원정진료 받는 국가유공자(2022.6.20.)”, KBS, “보훈병원 없는 제주...‘진료비 부담에 원정진료까지’(2024.6.7.)”

○ 또한, 의료지원에 있어 지역별 균형의 추구는 국가의 의무로 두었을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의료지원의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으로, 각 개정안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의료지원에 대해서만 이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의 ‘국가유공자 등’ 지원 주요내용>

법률	지원의무	조항	이행주체
국가유공자법	교육지원	제3장	국가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독립유공자법	교육지원	제15조	국가
	취업지원	제16조	
	의료지원	제17조	
특수유공자법	교육지원	제2장	국가
	취업지원	제3장	
	의료지원	제4장	
5·18민주유공자법	교육지원	제2장	국가
	취업지원	제3장	
	의료지원	제4장	
보훈보상대상자법	교육지원	제3장	국가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 종합적으로, 보훈의료지원 이행과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제공 의무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이행 여력을 갖추었는지와 균등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목표로서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의료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은 현행처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위탁 의료시설 지역별 기준 설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⁸⁾은 위탁 의료기관에 관한 각 지역별 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탁 시 이를 충족하도록 하려는 것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①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 ~ ⑧ (생략)	제42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 ~ ⑧ (생략)	제17조(의료지원)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부안

제33조(진료) ①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 ~ ⑦ (생략)	제33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4조(진료) ①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 ~ ⑦ (생략)	제34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①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후단 신설> ③ ~ ⑦ (생략)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각 개정안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의원급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보훈병원 소재지에 26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601개소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위탁병원 시도별 지정 현황(869개)>

(2024. 11. 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위탁병원 현황					비고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계	
서울	104	12	3	1	120	보훈병원소재지
부산	48	8	1	-	57	보훈병원소재지
대구	29	2	1	-	32	보훈병원소재지
인천	21	2	1	5	29	보훈병원소재지

구분	위탁병원 현황					비고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계	
광주	13	1	-	-	12	보훈병원소재지
대전	16	1	1	-	18	보훈병원소재지
울산	14	1	1	3	19	
세종	7	-	-	-	7	
제주	10	2	2	3	17	
경기	84	21	8	21	127	
강원	40	8	3	10	61	
충북	16	7	4	5	32	
충남	27	6	3	7	43	
전북	35	7	4	6	50	
전남	56	17	5	10	86	
경북	46	12	7	9	72	
경남	40	18	6	8	73	
합 계	606	125	50	88	869	

주) 위탁병원 지정 현황은 재계약, 폐업 등에 따라 수시 변동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의 시설 수나 의료인력의 규모 등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진료과목의 공급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⁹⁾

☐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위탁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한 지역별 최소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수준을 보장하고 의료서

9) 국가보훈부의 「2024년 국가보훈 실천계획」 p.129에 따르면,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안과·치과 등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의 확충 필요성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남.

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별 위탁병원 수, 진료과목 등에 대한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 위탁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적극적·탄력적 운영과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연도에 국가보훈부는 위탁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매년 100개소 이상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수 등 구체적인 지역별 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경우 상황에 맞는 기준 설정 및 변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최근연도 위탁병원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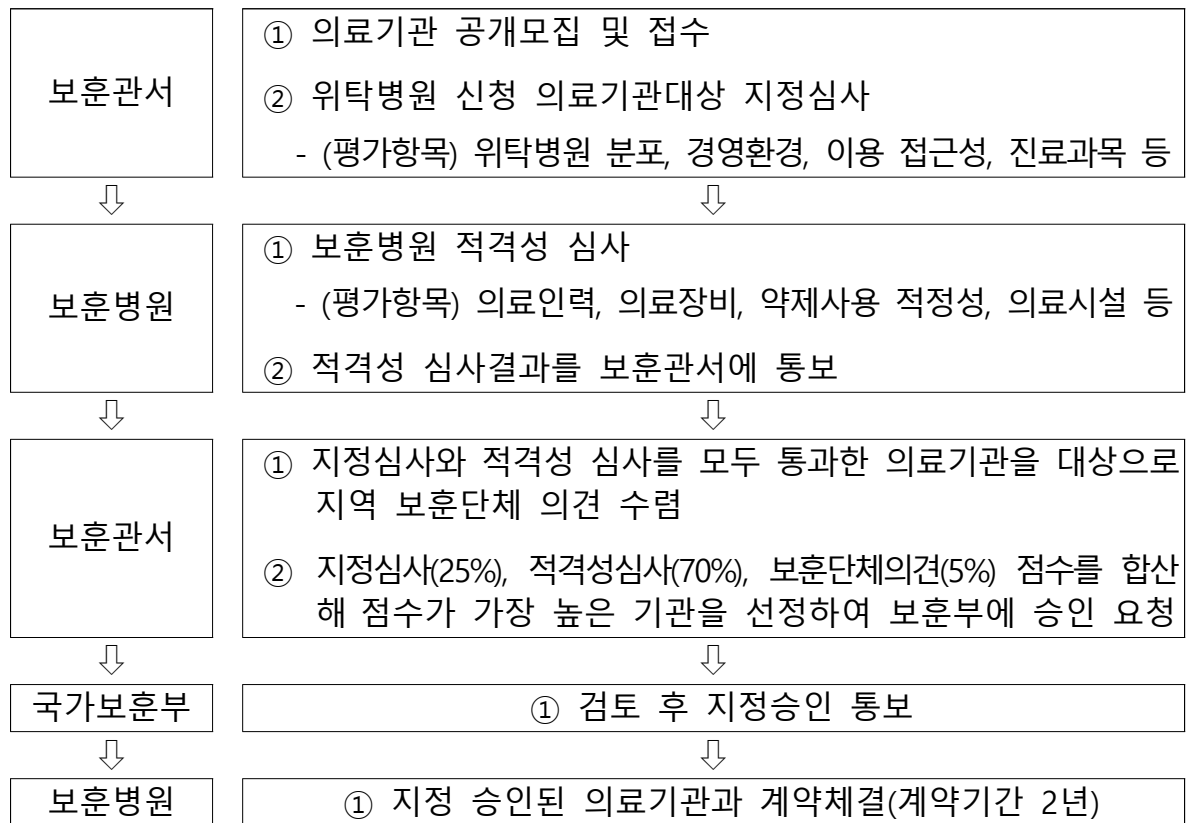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1)
위탁의료기관	320	418	518	582	702	869

자료: 국가보훈부

○ 그리고, 현재 의료기관 위탁은 모집 및 접수, 심사, 지정 승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과 2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탁 현황은 재계약, 폐업 등 사후적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위탁 의료기관 지정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 위탁 시 지역별 충족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보훈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나, 법령에 기준을 설정할 경우 급변하는 제도운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매년 지역별 의료 공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의료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진료과목, 전문의 수 등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10)에 따라 심사하여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제29조(지정기준)

- ①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1. 국·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 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③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

- ① 장관은 위탁병원 지정계획을 예산, 지역별 의료수요 및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②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모집 계획을 해당 지역 보훈단체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수립 시 해당지역 의료수요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지정대상 심사)

-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 ⑥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07